##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96

발의연월일: 2024. 6. 25.

발 의 자: 장경태·박민규·강준현

복기왕 · 박용갑 · 김승원

김용민 · 민형배 · 안태준

김성환 · 최민희 · 이재관

양부남 • 이병진 • 문금주

허종식 • 이학영 의원

(17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2년 발생한 검사 성추문 사건에서 해당 검사를 뇌물수수 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할 수 밖에 없었던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수사기관이 피의자, 참고인 등 수사에서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하여 자기로부터 수사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간음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죄목이 없음.

이에 검찰 또는 경찰 등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자기로부터 수사받고 있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간

음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3조의2 신설 및 제305조의2). 법률 제 호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3조의2(수사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검찰 또는 경찰 등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자기로부터 수사받고 있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간음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5조의2 중 "제303조"를 "제303조, 제303조의2"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303조의2(수사상위력 등에 의
	한 간음) 검찰 또는 경찰 등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자기로부
	<u>터 수사받고 있는 사람을 위계</u>
	또는 위력으로서 간음한 경우
	<u>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u>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5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2	제305조의2(상습범)
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u>제303조</u>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	제303조의2
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	
까지 가중한다.	